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심결사례

2001. 8. 21.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에스케이글로벌(주)의 계열 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 행위에 대한 건 (2001독점 1508)	에스케이글로벌(주)는 단말기 제조업체들과 단말기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함에 있어 자기의 계열회사인 에스케이텔레텍(주)에게는 단말기 구매가 이루어지는 당월말일을 기산일로 하는 60일 만기어음을 익월 20일자로 지급한 반면, 엘지전자(주) 등 비계열회사에게는 90일 만기어음을 익월말일자로 지급하였고, 에스케이텔레텍(주)에게는 판촉비를 구매액의 0.5%만 부담시킨 반면 엘지전자(주) 등 비계열회사에게는 0.8% 내지 1.3%를 부담시키는 등 거래조건에 있어 비계열회사를 현저히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를 하였고, 단말기 제조업체들로부터 011단말기를 구매함에 있어 에스케이텔레텍(주)로부터의 구매비중을 2000년 6월 내지 10월 동안 평균 39%까지 높여 공급받은 반면, 삼성전자(주)로부터는 50%에서 11%로, 엘지전자(주)로부터는 같은 기간 동안 23%에서 21%로 단말기 구매비중을 각각 축소시키는 등 거래불량을 차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위반	◎ 과징금 납부 : 100,000천원

2001. 8. 22.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 행위에 대한 건 (2001단체 0173)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은 1998. 4. 13.부터 2000. 9. 30.기간 중 한국화학연구소 등 9개 기관이 발주한 자동제어반의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1999. 2. 24.자로 제정된 자신의 내부규정인 '배정심의회 물량배정세부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동 구매정보를 사전에 입수, 물량배정 신청서를 접수한 조합원 중에서 신청 선순위 업체만을 대상으로 물량배정업체를 선정하였으며, 1998. 4. 13.부터 2001. 2월까지 동 운용요령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수의계약 전별로 예산액을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의 물량에 대하여는 계약 전별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근 1~3년간 물량배정을 받지 못한 업체에게 배정하면서 물량배정 순위, 기준 등을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급적 장기간 무배정 업체 순서로 임의로 선정하여 배정하였으며, 물량을 배정 받은 업체 중	◎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제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 과징금 납부 : 36,000천원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대표업체가 지명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배정 업체를 선정, 물량을 배정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 제3호 위반	

2001. 8. 23.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구속 조건부거래행위 및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대한 건 (2001독점1512)	한국전기통신공사는 통신서비스 매출 확대를 위해 별정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진흥(주) 등 77개 업체와 가입자모집 영업업무위탁계약을, 쌍용정보통신(주) 등 14개 업체와 재고금 영업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경쟁사업자와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영업활동 또는 제휴 등 이중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는 한편, 2000. 11. 27.부터 같은 해 12. 23. 까지의 기간동안 “Megapass ADSL 겨울방학 대축제” 행사를 실시하면서 동 기간 중 ADSL 및 게임PLUS에 유료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데스크탑 PC 등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품류를 제공, 부당한 소비자경품제공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	◎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및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기와 영업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2001. 8. 24.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경상남도 창원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매각입찰 참가 2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1부사 0437)	에코시스템(주)의 대표이사 김용진은, 2000. 10월경 지스코(주) 대표이사 김진영 등 3명과 함께 2001. 1. 12. 모임을 갖고 창원폐기물처리장을 (주)거양 명의로 낙찰 받아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협의하고, 2001. 2. 27. (주)거양 명의로 입찰등록을 하였으나 (주)거양 외에 다른 업체가 입찰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유찰될 것을 우려, 김진영이 지스코(주) 명의로 입찰등록을 하였으며, 이후 김용진과 김진영은 (주)거양의 낙찰을 위하여 입찰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김용진이 김진영보다 약 10만원 높은 금액으로 응찰하기로 협의, (주)거양이 창원폐기물처리장을 낙찰받는 등 입찰금액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위반	